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51923 양수금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

변 론 종 결 2015. 11. 3.

판 결 선 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2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원고가 B에게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2014. 7. 14.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부속물 일체의 소유권 및 영업허가권을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2014. 7. 14.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과 C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4.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로 합계 29,201,2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B,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6858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진정한 소유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하였다.

라. 위 소송 계속 중 2015. 3. 6.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B, C 사이에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B,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에 갈음한 의무임을 쌍방이 인정한다. B, C은 2014. 7. 18.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redacted]시에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redacted]시에게 통지할 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B, C을 대위하여 201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납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취득세 등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취득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B, C으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29,201,200원을 지급받았으나, B, C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B,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실질적으로 재화의 신규 이전이 없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B과 C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고 재화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 신고, 납부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취득세 환급청구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로 원고와 B, C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별지

부동산의 목록

1. [redacted]군 D 전 1,884㎡
2. E 대 1,058㎡
3. F 잡종지 160㎡
4. [redacted]군 E 지상의,

 [도로명 주소] [redacted]군 G

 시멘트 벽돌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온실, 화장실

 1층 82.80㎡, 2층 48.06㎡, 지층 92.08㎡

 (부속건물)

 목조 너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5.20㎡
5. D 지상의,

 [도로명 주소] [redacted]군 H

 철근 콘크리트 구조(철근) 콘크리트 지붕 2층 숙박시설

 지하 1층 96.37㎡, 1층 371.98㎡, 2층 62.4㎡. 끝.